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41호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9년 7월 23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 ²)
1	문현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26,812,384
2	센텀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	51,473,049
3	동삼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원)	14,195,627
4	동삼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서구 일원)	13,978,324
5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일원)	678,092
6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일원)	1,683,954
7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일원)	217,523
8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일원)	232,215
9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원)	843,232
10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190,540
11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343,477
합 계		110,648,417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 목적 :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관련 실증지원으로 신산업 시장 선도
- 지정 기간 : 2019.8.9. ~ 2024.8.8.(5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용
1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신신물류(콜드체인) 관리 및 유통 이력지능화 관리 시스템 실증
2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	○ 블록체인 원장 기반 스마트투어 티켓 발급 및 사용 플랫폼 실증 ○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스마트 컨택트 통한 실시간 정산
3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실증	○ 블록체인 시스템 기반의 재난, 사건·사고 영상 제보·공유 및 보상 플랫폼 서비스 실증
4	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 실증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지역화폐의 발행, 유통 및 양도를 위한 분산원장시스템 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비피엔솔루션	박부근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806호 (재송동,센텀스카이비즈)
2	(재)부산테크노파크	최종열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435-1 (동삼동)
3	(주)현대페이	김정익	서울시 중구 퇴계로 272 (장충동2가,아도라타워)
4	(주)한국투어패스	문병진	강원 강릉시 공제로 357(홍제동)
5	(주)사라다	지승태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903호 (재송동,센텀IS타워)
6	(주)코인플러그	어준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6번길 20 현대백화점 판교점 오피스(Office H)11층
7	(주)부산은행	빈대인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산은행 본점 (문현동)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 기간
1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2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3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4	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 부여 현황
1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p>①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에 대한 한시적 허가 실증특례 허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2018-444 제3조 1항) → (부대 조건) 5대 이하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해 운송사업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해당 실증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년간 한시적 허용</p> <p>②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Off-chain)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개인정보는 삭제가능한 별도서버에 저장, 참조값(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는 키)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 → (부대 조건)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술로서 블록체인 기술 효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 기재된 원본 정보의 저장위치를 알 수 있는 맵핑정보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원본정보를 삭제하여 해당 맵핑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p> <p>③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위치정보법 제23조) → (부대 조건)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술로서 블록체인 기술 효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 기재된 원본 정보의 저장위치를 알 수 있는 맵핑정보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원본정보를 삭제하여 해당 맵핑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p>
2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	<p>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부대 조건)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술로서 블록체인 기술 효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 기재된 원본 정보의 저장위치를 알 수 있는 맵핑정보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원본정보를 삭제하여 해당 맵핑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p> <p>②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 (부대 조건) 신청한 오프체인 방식의 파기를 특례로 허용하나, 가상통화를 개발한 업체인 점을 고려하여 특구 내 관광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실증사업만 수행하고 가상통화 관련 어떠한 사업도 수행하지 않을 것</p>

		<p>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 완화(30→90일)(위치정보법 제19조) → (부대 조건) ①개인정보주체에게 법 제24조 열람·고지 등의 권리 행사가 가능함을 알기 쉽게 충분히 고지하고, ②정보주체의 동의 후 9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할 것</p>
3	블록체인 기반 공공인원 영상 제보 서비스실증	<p>① 위치정보 기록·보존시 블록체인 기반 영상 제보 시스템을 위치정보 시스템으로 인정(위치정보법 제16조 2항)</p> <p>②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삭제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의 실증특례 허용(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0조의2 2항) → (부대 조건)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술로서 블록체인 기술 효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 기재된 원본 정보의 저장위치를 알 수 있는 맵핑정보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원본정보를 삭제하여 해당 맵핑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p> <p>③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의 실증특례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부대 조건)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술로서 블록체인 기술 효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 기재된 원본정보의 저장위치를 알 수 있는 맵핑정보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원본정보를 삭제하여 해당 맵핑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p>
4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 회계 활성화 서비스실증	<p>① 분산원장시스템에서의 합의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인정하는 실증특례 허용(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 2항) → (부대 조건) 시스템 구축 시 금융보안,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 후 금융위가 지정하는 기관 등(금융보안원 등)으로부터 상기 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받은 후 사업을 시행할 것</p> <p>②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 (부대 조건)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술로서 블록체인 기술 효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 기재된 원본정보의 저장위치를 알 수 있는 맵핑정보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원본정보를 삭제하여 해당 맵핑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을 특례로 적용</p>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스마트시티추진권에 비치



본 지도는 참조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측정용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본 지도는 참조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측정용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대



본 지도는 참조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측정용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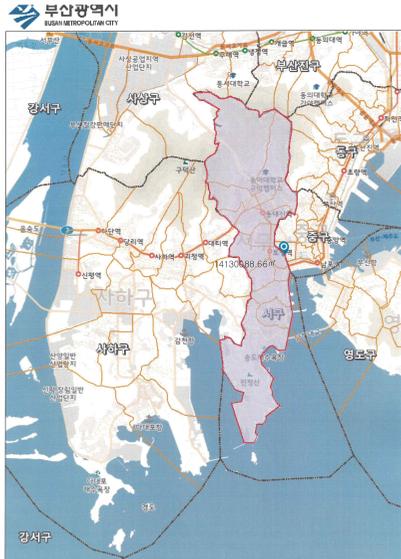
본 지도는 참조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측정용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일대



본 지도는 참조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측정용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원



본 지도는 참조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측정용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부산광역시 서구 일원



본 지도는 참조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측정용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일대



본 지도는 참조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측정용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일대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 ²)
1	(첨단산업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호산동,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10,065,000
2	(혁신의료지구)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동 1번지 등	3,056,000
3	(융합R&D지구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 경북대병원(동호동, 학정동) 일대	231,000
4	(융합R&D지구2) 경북도청후적지(대구광역시 산격동 1008번지 등), 대구삼성창조캠퍼스(대구광역시 침산동 1757번지 등)	216,000
합 계		13,568,000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 목적 : 스마트 웰니스 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지정 기간 : 2019.8.9. ~ 2023.8.8.(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용
1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프린팅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실증 ○ 첨단의료기기 제조에 관한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2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되는 인체지방(콜라겐)을 활용한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실증
3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약관리, 심전도·혈압 등 재택 의료기기를 활용한 임상 시험·관리 서비스
4	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식별화된 의료정보(구강 CT, 뇌파, 심전도 등)를 의료기기 제조기업 신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알고리즘 개발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임기병	대구시 동내로 70
2	애니메디솔루션(주)	김국배	대구시 동구 동내로 70, 5층 504호
3	(주)해피엘	이민영	대구시 동구 동내로 70, 5층 50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스마트시티추진과(Tel : 051-888-6746, 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4	(주)멘티스로지텍	김의준 이일환	대구시 수성구 총의로 38, 2층
5	(주)코렌텍	선두훈 선승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영산흥1길 12
6	바이오코엔(주)	양원돈	경기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2길 33-2, 301호
7	(주)지에스메디칼	신민식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90
8	(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	강국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25, 201호
9	(주)스몰머신즈	최준규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3-14, 다동 302호
10	(주)지비에스커먼웰스	안경기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C동309호
11	엠펜웍스	주성호	울산시 중구 중가로15 기술혁신동 A-204호
12	(주)비트러스트메디텍	서정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99 4층 4015호
13	알앤엑스(주)	임도형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81 삼성의료원 암병원 지하4층
14	대구첨복재단	이영호	대구시 동구 동내로 88
15	오스젠(주)	이춘희	대구시 동구 동내로 76 한국메디벤처센터 708호
16	(주)엔도비전	정민호	대구시 동구 동내로 66-26
17	(주)지티텍	김주성	대구시 동구 동내로 76 한국메디벤처센터 901호
18	(주)바이오잉크솔루션	서장수	대구시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대병원 1동 4108-2호
19	경북대학교병원(철곡)	손진호	대구시 북구 호국로 807
20	(주)제윤	윤태원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대구융합 R&D센터 1035호
21	클루피(주)	김기환	대구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 창조캠퍼스 벤처오피스 215호
22	헬스커넥트(주)	임동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브이플렉스
23	(주)트라이벨랩	이상학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창보 신관 210호
24	(주)메가젠임플란트	박광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7길 45
25	(주)씨유메디칼시스템	나학록	대구시 동구 동내로 88 커뮤니케이션센터 608호
26	(주)원소프트다임	이대호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지곡연구동 1층
27	(주)블록체인씨앤에스	윤명철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신기술산업지원센터 1동, 403호
28	(주)이튜	김은선 김광수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31길 37 2층 203호
29	(주)휴원트	이욱진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201동 2층 203호

30	(주)인피니트헬스케어	김동욱	대구시 동구 동내로 76, 한국메디벤처센터 9층 906~907호
31	NBP(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박원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 내곡로 117 크래프톤타워 11층
32	계명대동산의료원	김권배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 산2-1
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동희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34	(재)대구테크노파크	권업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35	(주)헬스올	도형호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201동, 스마트헬스표준테스트베드실
36	(주)하이디어솔루션즈	이승엽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3 두앤캔빌딩 4층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실증	2019.8.9. ~ 2021.8.8.
2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2019.8.9. ~ 2021.8.8.
3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2019.8.9. ~ 2021.8.8.
4	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2019.8.9. ~ 2021.8.8.

-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첨단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구축 및 품질 책임자 공동 지정 실증	①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 (부대조건) 허가 신청시 공동 제조소 사용 관련 증명자료 제출 (공동사용계약서 등), 공동제조소 시설기준 위반시 동시 처벌 등 ②공동제조소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 (부대조건) 허가 신청시 품질책임자는 대표로 신청하고 품질관리 업무위탁 증명자료(위수탁계약서) 제출, 품질책임자 지정 교육의무 준수 * 품질책임자는 대표지정, 품질관리 업무 위탁

2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가기 개발·실증	<p>①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가기 실증 허용 → (부대조건) 인체유래물(지방) 기증자에 대한 동의 등 윤리적 측면과 기증자 적합성, 콜라겐 제조공정의 안전성, 기증자 추적 및 병력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검증하는 등 의료가기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전제(①②)로 실증 허용</p> <p>①(기증자 적합성) 인체유래 콜라겐의 원료가 되는 지방 기증자 동의서, 바이러스 미감염 자료 등 ②(창상피복재 안전성·유효성) 인체유래 콜라겐 사용 창상피복재 허가 시 콜라겐 원재료 및 창상피복재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 자료' 구비</p> <p>*인체조직에서 콜라겐을 추출하여 의료가기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최소사례임을 감안하여 감염 위험(바이러스, 약물투여 이력, 병력 등) 안전성 입증 등을 위한 자료 필요</p>
3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p>①재택수집 데이터 전송 및 피임상자 관리안내 기반의 임상시험 허용 → (부대조건) 재택 의료가기로 측정된 데이터를 의료가기관에 전송, 의사가 환자상태를 모니터링(내원 안내) 및 상담(교육·안내)하고, 원격으로 수집된 정보는 대면진료시 활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료행위 불가하며, 이상징후 시 내원안내 가능 - 수집된 의료정보의 저장·관리는 의료법 등 관련 규정 준수 필요 <p>*모니터링 기기는 식약처 의료가기 허가 시, 실증특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허가 사항(기기→서버로 데이터 전송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의료가기 허가관련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p>
4	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	<p>①IoT클라우드 기반 비식별 웰니스 데이터 저장관리 공유 허용 → (부대조건) 비식별 조치는 의료가기관 내에서 수행하고, 사회보장정보원 등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의 비식별 적정성 평가를 전제로 허용</p>

<메뉴판식 규제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IoT기반으로 수집된 비식별화 개인정보 활용한 제품·서비스 (2건)	<p>IoT기반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특구법 제118조에 따라 실증기간 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절차 준수를 전제로 허용</p> <p>*(서비스) 외출/식사 횟수 변화에 따른 위험상황 예측 알고리즘 개발, 개인 복약 순응도 판단 알고리즘 개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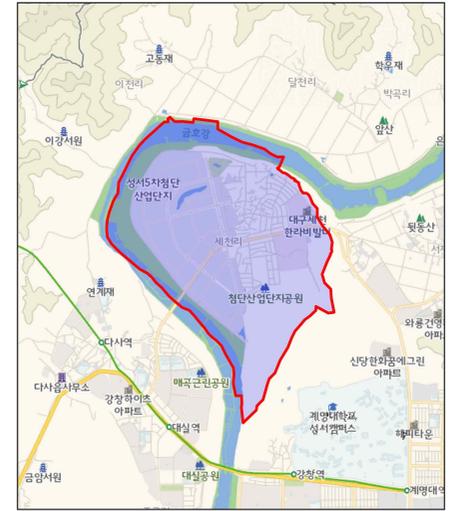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정책과에 비치



본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축량 및 법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1:25,000

첨단산업지구(달서구 호산동, 대천동 일대)



본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축량 및 법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1:15,000

첨단산업지구(달서군 다사읍 세천리 일대)



본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축량 및 법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1:15,000

혁신의료지구(대구 동내동 일대)



본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축량 및 법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1:5,000

융합R&D지구 I(북구 칠곡 경북대병원 일대)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융합R&D지구 II
(경북도청후적지,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일대)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정책과(Tel : 053-803-6542, www.daeg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 ²)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연기면 세종리, 아름답, 도담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반곡동, 금남면 집현리, 연동면 함강리 일원)	15,210,000
2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123번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구청사 부지) 일원	20,000
합 계		15,230,000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 목적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실증지원으로 신산업 시장 선도
- 지정 기간 : 2019.8.9. ~ 2023.8.8.(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용
1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자율주행차를 세종시 도심 구간에서 테스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송 상용화 서비스” 실증
2	시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자율주행차를 도심공원내에서 일반시민 및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전용주행로”에서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실증
3	자율주행 관제 및 데이터 수집·공유실증	○ 자율주행 실증시 수집되는 각종데이터를 분석·활용·공유할 수는 있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엔디엠	허원혁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층
2	(주)에이아이모빌리티	정태권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603호
3	마스코리아(주)	박정훈	세종시 한누리대로 2149, 510호
4	(주)네스원	정영균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콤플렉스동 B710, B711호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으로 이전 예정

5	(주)켄트로닉스	김보균	세종시 전동면 배일길 31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으로 이전 예정
6	(주)LG유플러스	하현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으로 이전 예정
7	(주)엔맨드솔루션	문희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길 115, 3층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으로 이전 예정
8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세종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
9	(재)세종테크노파크	이춘희	세종시 조치원을 군청로 93
10	(주)케이티	황창규	세종시 가름로 170-10 KT 여진국사
11	(주)에이텍이엔	신승영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삼평동, 에이텍빌딩)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으로 이전 예정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 기간
1	세종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2	세종 시민참여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3	자율주행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2019.8.9. ~ 2021.8.8.

-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배정을 통한 사업비 조달
-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세종시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p>① 일반 도심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p> <p><실증차량 부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 단,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 - (차량안전)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 '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기준에

		<p>따라 자율주행제어기,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안전)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 - (보험가입)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 <p><단계별 실증(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3개월) : 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구조물, 노면 표시 등을 설치하고, 구간 통제를 통한 테스트 진행 - 2단계(3개월) : 자율차량의 앞뒤 유도차량을 배치하여 일반차와의 사고를 방지한 실증 테스트 진행 - 3단계(6개월) : 유도차량 배치, 구간 통제 등을 통한 실증후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 일반차와 함께 실증 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일반차 혼재시 구간 안전요원 및 도로안내요원 배치 - 4단계(1년) :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 - 5단계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 <p>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영상기록장치의 활용 실증특례 부여</p> <p>→ (부대조건) 자율차 실증·정보 축적을 위해 특례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영상기록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당사자 동의 확보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 <p>③ BRT 노선 구간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p> <p><실증차량 부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 단,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 - (차량안전)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 '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제어기,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 - (운행안전)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 - (보험가입)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 <p><단계별 실증(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6개월) : 일반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BRT전용도로 미운행 구간에서 테스트 진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3개월) : 구간은 미운행 구간, 아간은 버스 운행 종료 이후 (1200~200) 세종 터미널-국책연구단지-세종테크밸리 구간 등에서 실증 테스트 진행 - 3단계(6개월) : 아간 시간에(1200~200) 실증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 - 4단계(9개월) :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 - 5단계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 <p>④ BRT 구간에 5~11인승 자율차 진입 실증특례 부여 → (부대조건) 사고시 도로 긴급보수가 가능하고, 대중교통 운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간시간(1200~200) 운행시 만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버스 운행 시간(5:30~) 전에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2	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p>① 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특례(자율차 진입, 영업행위) <실증차량 부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 단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 차량 허용 - (차량안전)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 '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제어기,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 - (운행안전)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 - (보험가입)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 <p><단계별 실증(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3개월) : 신규로 조성되는 세종 중앙공원에 산책로, 자전거도로와 구분되는 '자율차 전용주행로'를 구축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돌발 감지기 등 인프라 설치 - 2단계(9개월) : 세종 중앙공원 준공('19.10) 이후 시민에게 개방('20.6) 되기 전까지 충분한 실증 테스트 진행 - 3단계(3개월) :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 - 4단계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

		<p>② 도시공원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허용관련, 공원시설의 종류에 자율차 관련 시설물 규정이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부대조건)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공원조성계획에 전용주행로 구축 및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p> <p><단계별 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3개월) : 신규로 조성되는 세종 중앙공원에 산책로, 자전거 도로와 구분되는 자율차 전용주행로를 구축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돌발감지기 등 인프라 설치 - 2단계(9개월) : 세종 중앙공원 준공('19.10) 이후 시민에게 개방('20.6) 되기 전에 충분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 실시
3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p>① 주행 중 수집한 각종 영상정보(개인정보 포함)를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하여 활용할 것(개인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 숫자 등) -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 감독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

* ①자율차 실증 사업자에게 도로·유지관리 권한 부여 특례실증, ②도심공원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면허 부여 실증특례의 경우 규제 없음이므로 '신속허가'로 변경

<메뉴판식 규제특례>

No	특례명	특례부여 현황
1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 시설물 설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도로점용 특례 부여
2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후 특허 심사, 출원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 심사 특례부여
3	지역특구법 제115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위치정보수집의 특례 부여 → (부대조건)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한 정보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활용할 것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에 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아람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군청로 93

※ 주) 반곡동 일원, 금남면 집현리 일원 녹지지역 중 일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에 비치된 지형도면 확인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Tel : 044-300-4032, www.sejo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 ²)
1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60	12,962
2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53	743
3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92-1	10,000
4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7-1	24,000
5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울문리 946	3,383
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울문리 942	4,561
7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3	12,945
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509-1	9,729
9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80	12,814
1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46-1	2,748
11	강원도 춘천시 교동 153	1,723
12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산66	121,525
1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496	325,370
14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304-1	23,550
15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6	33,007
16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25	37,113
17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19	31,989
18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22	566
19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33	15,083
20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50-13	1,608
21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60-5	3,212
22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67-3	6,441
23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56-1	5,495
24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52-3	1,650
25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50-1	21,308
26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47-3	6,044
27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47-1	10,790
28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44-1	27,432
29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850-1	742
합 계		768,533

- 단, 원격의료의 대상은 춘천,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거주자로 한다.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 목적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지정 기간 : 2019.8.9. ~ 2023.8.8.(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용
1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병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 고혈압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 DUR정보를 활용한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2	l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참가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료허용 ○ 만성질환자(당뇨, 고혈압)의 원격 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3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의 사용을 허용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09 수당빌딩 4층
2	(주)유비플러스	조재익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길 1, 산학협력관 22512호
3	(주)미소정보기술	안동욱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서울숲 IT 캐슬 1010호)
4	(주)리얼타임메디체크	김 희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72, 303호(송도동)
5	(주)메쥬	박정환	강원 원주시 기업도시로 200
6	(주)바이오닉스	김대성	강원 신북읍 신북로 60-10
7	에이치디티(주)	오준호	광주시 북구 우치로 880번길 29
8	(주)엑스엘	박래준	강원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9	강원대학교병원	이승준	강원 춘천시 효자3동 백령로 156
10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이재준	강원 춘천시 교동 삼주로 77
11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백순구	강원 원주시 일산동 일산로 20
12	강원임베디드SW센터	정태윤	강원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405호
13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백종수	강원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14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	박준영	강원 원주시 중앙로 83 3층(중앙동 122번지 3층)
15	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울문리 946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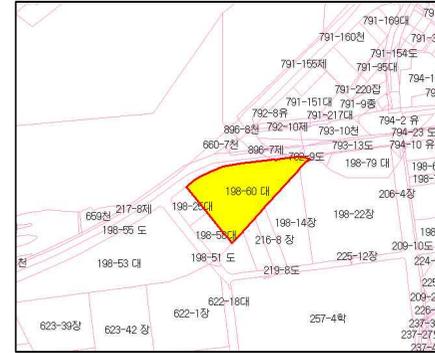
No	사업명	시행 기간
1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2	l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3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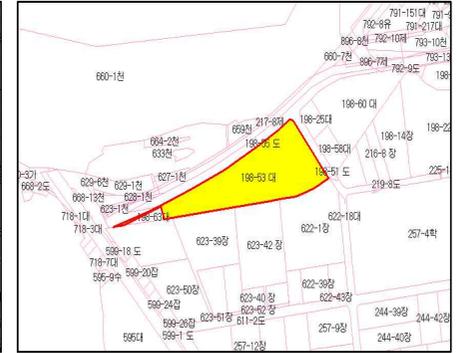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p>①, ② 만성질환(당뇨, 혈압) 환자의 혈당 또는 혈압정보, 건강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시 내원안내, 진단, 처방 등의 조치를 제공할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p> <p>→ (부대조건) 춘천,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거주지 주민, 군부대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 혈압 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가능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함</p> <p>③ DUR정보를 활용 및 분석하여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 특례를 허용</p> <p>→ (부대조건) 실증참여 업체(제약사)가 강원지역 내 요양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제품에 한하여 DUR을 통한 처방 관련 데이터* 제공</p> <p>* 요양기관명, 백신명, 처방일, 처방수량</p>
2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p>① 행사참가자를 대상으로 생체신호 모니터링용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고, 원격지의 의료진이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시 처치 및 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p> <p>→ (부대조건) 원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진단, 처방 의료행위 불가하며, 응급상황이라고 판단 시 응급 구조대에 상황 전달 가능하며, 내원안내 및 상담(교육, 안내) 가능</p> <p>② 만성질환자 대상 환자모니터링 장비(환자감시장치, 체지방분석기, 혈당측정기 등)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내원안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허용</p> <p>→ (부대조건) 춘천,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거주지 주민, 군부대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 혈압 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가능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함</p>
3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실증	<p>①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병원밖 재난현장이나 군부대에서의 사용을 통한 실증특례를 허용</p> <p>→ (부대조건) 휴대용 엑스선의 사용기준이 없어 실증을 통해 사용 기준을 만드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엑스선 사용·취급시 간이형 칸막이 및 납차마를 착용하고, 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만 가능한 조건으로 허용, 영상판독은 원격지 의사와 협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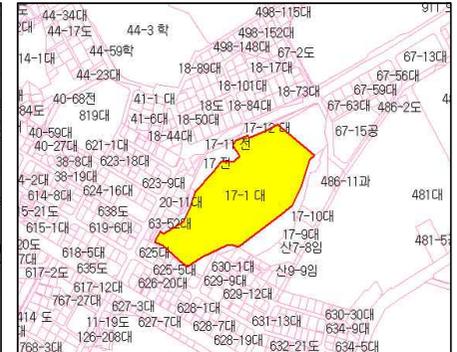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6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53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92-1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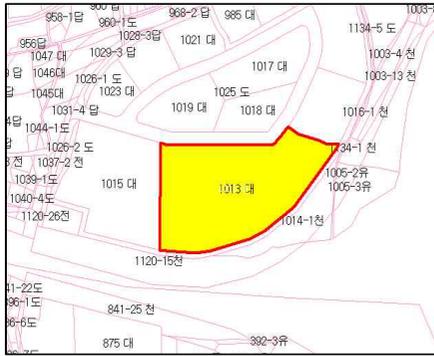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울문리 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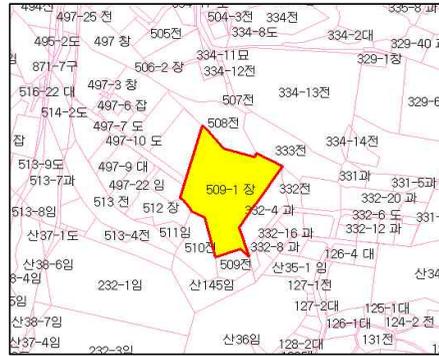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울문리 942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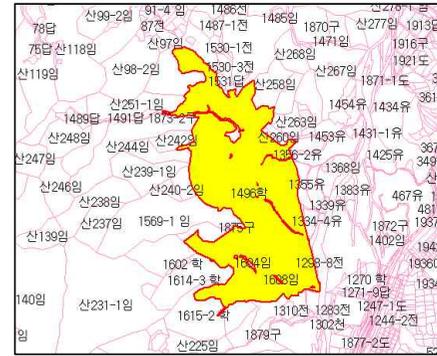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강원도 경제진흥국 전략산업과에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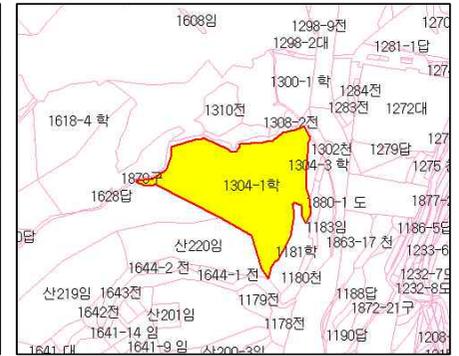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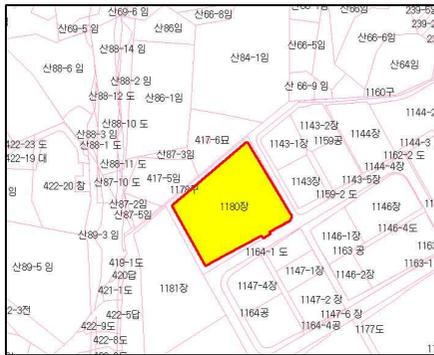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5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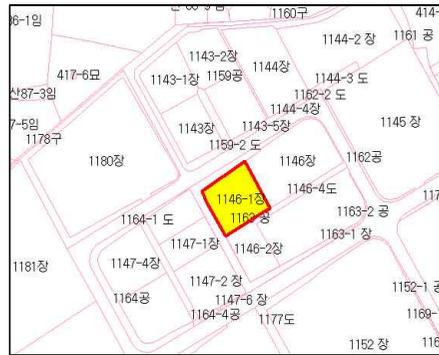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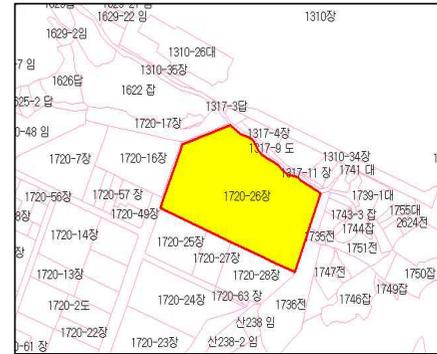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3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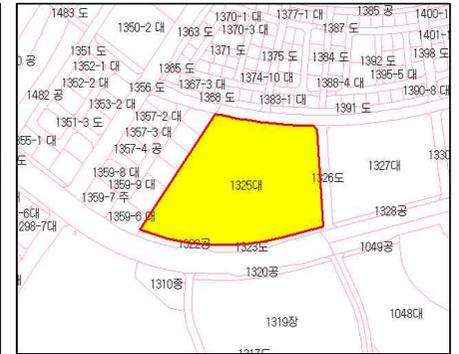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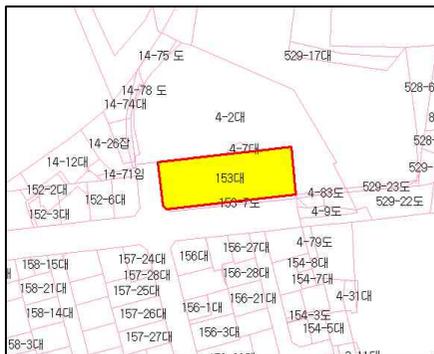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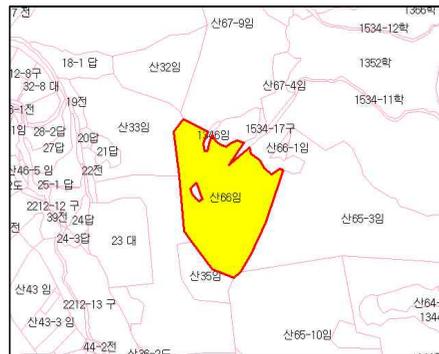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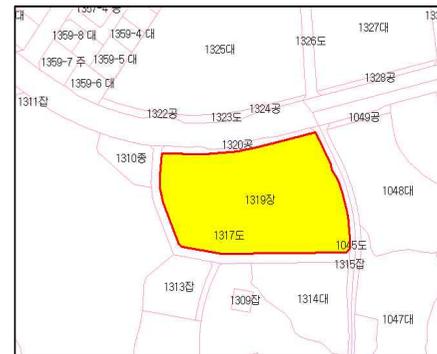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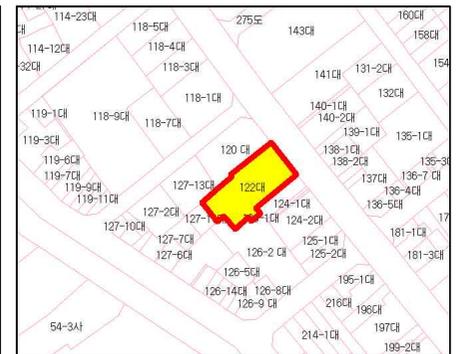
강원도 춘천시 교동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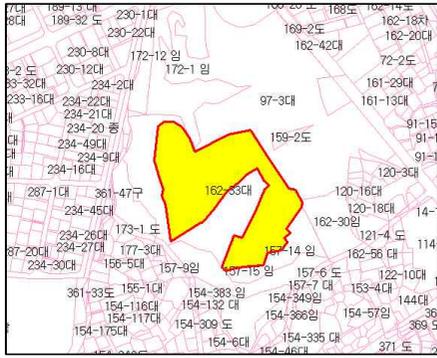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흥업리 산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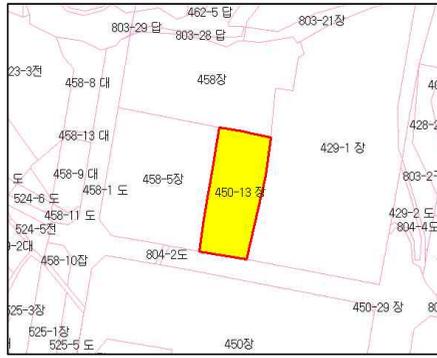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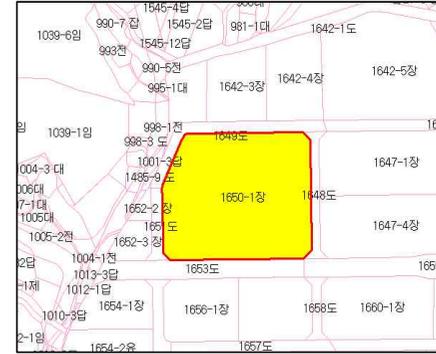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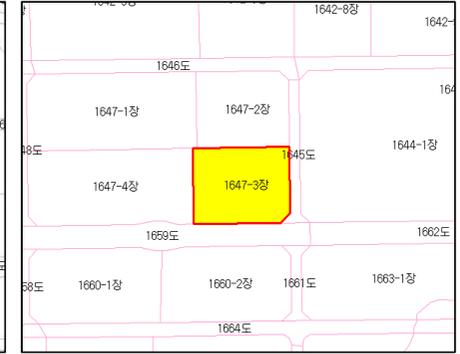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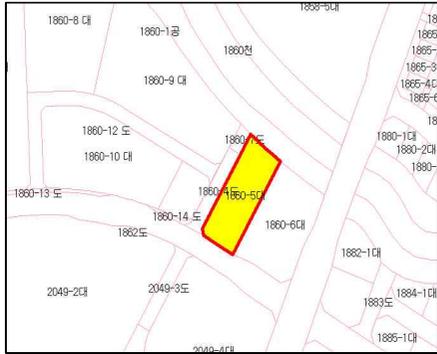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5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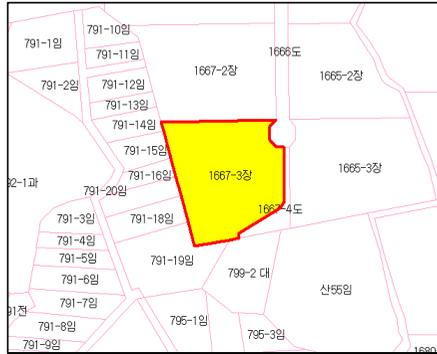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하리 16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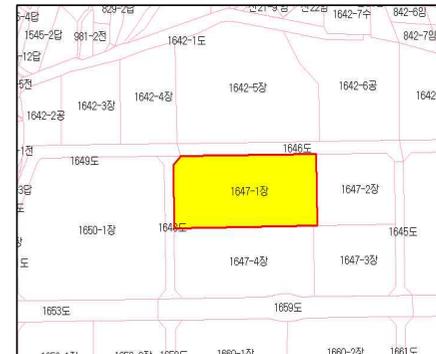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하리 16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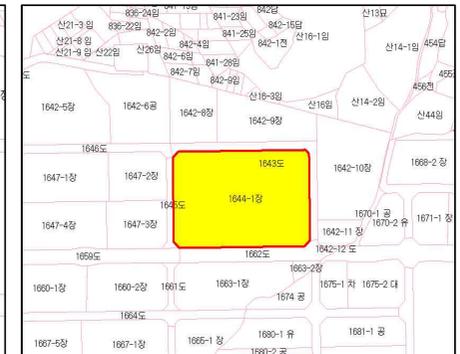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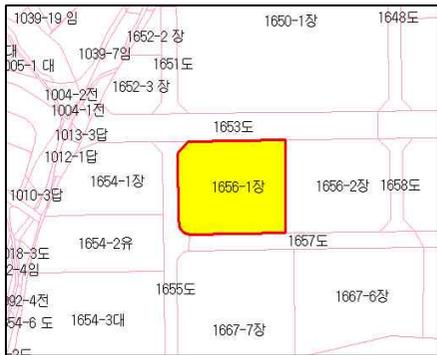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하리 16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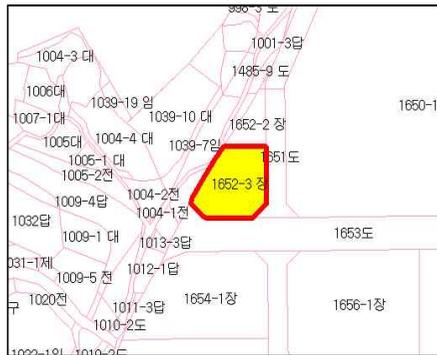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하리 16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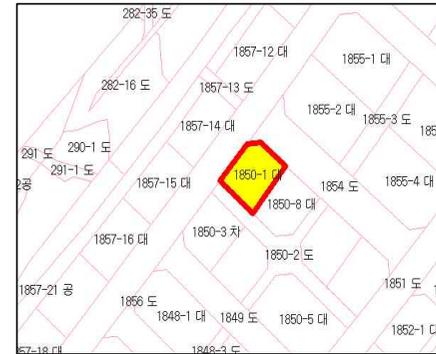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하리 1644-1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하리 1656-1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하리 1652-3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850-1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강원도 경제진흥국 전략산업과(Tel : 033-249-3473, www.provin.gangw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충청북도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충청북도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 ²)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655-2	50,844.7
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608	14,395.7
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3165	5,778.7
4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119	2,499.8
5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169	2,968.6
6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03	2,584.7
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43	1,225.2
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47	54,000.0
합 계		134,297.4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 목적 : 무선기반 가스차단·제어 실증기반 구축으로 IoT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마트 안전제어 신산업 창출 및 스마트제조혁신 확산
- 지정 기간 : 2019.8.9. ~ 2023.8.8.(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용
1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시설 무선 차단·제어 성능 평가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인프라) ○ 누출검지 고도화 및 산업용 IoT기반 스마트 차단·제어 장치 실증기술 개발(R&D) ○ 가스 제어 및 차단용 플랫폼 기반 안전제어 서비스 개발 및 원격 차단·제어 연동 실증기술개발(R&D) ○ 스마트 안전제어 기술 촉진 지원사업(비R&D)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고영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2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김진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3	주식회사 유피오	박수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4층 415호 * 충북혁신도시 내 (입주 예정)
4	인투카오스 주식회사	박미선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314호
5	주식회사 퀴텐센싱	황규중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313호
6	주식회사 스마트센싱	박수영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76 302호
7	한국정보공학(주)	이세복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9번길 7 경림빌딩 7층 * 충북혁신도시 내 (입주 예정)
8	주식회사 엑사	김지영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301호
9	케이에스이씨주식회사	김광석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218호
10	주식회사 부품디비	황진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76-55, 2층 * 충북혁신도시 내 (입주 예정)
11	주식회사 씨알아이지	김동현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209호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 기간
1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2019.8.9. ~ 2021.8.8.

-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①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성능(신뢰성·안전성) 실증특례 허용(현재는 유선만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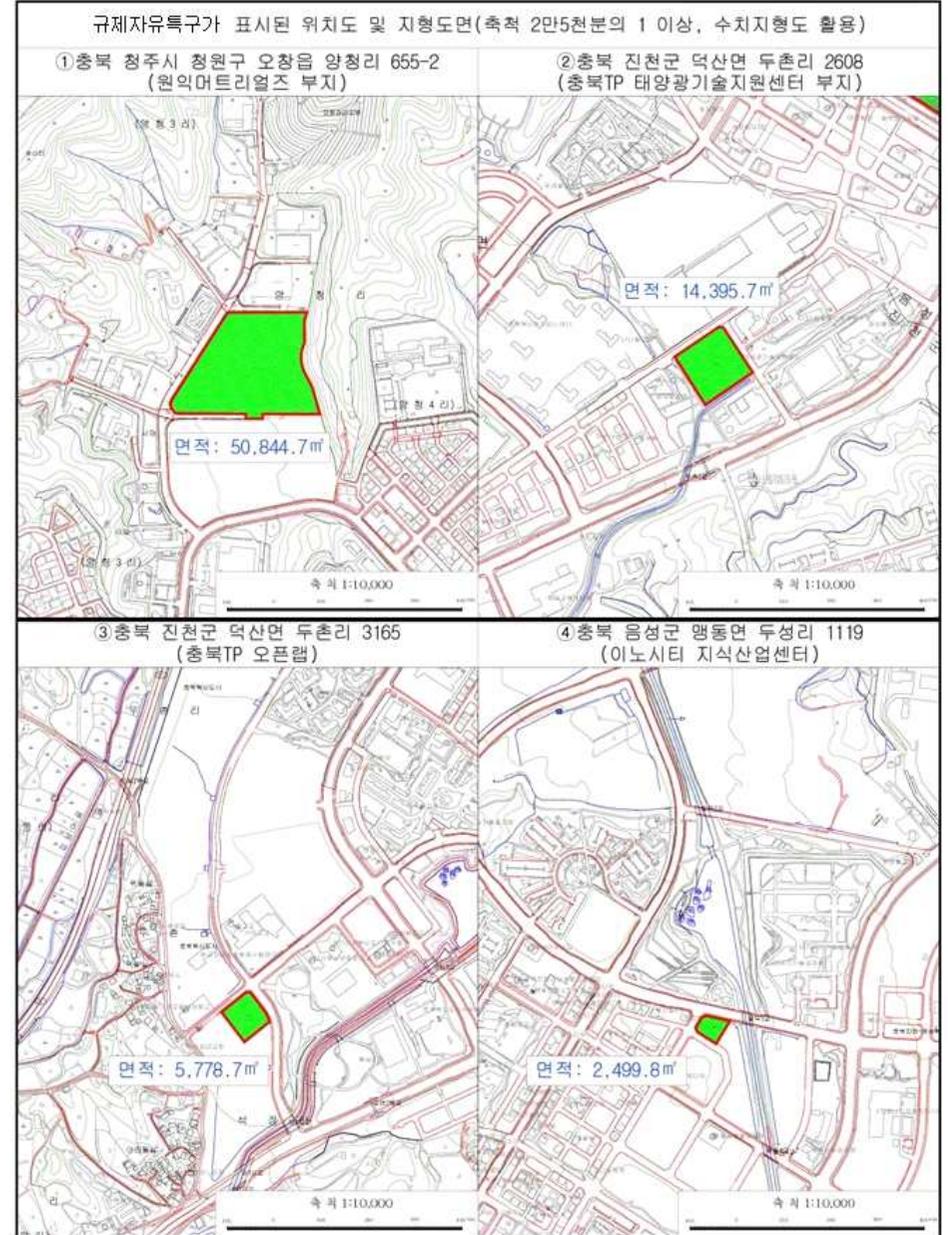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p>→ (부대조건) 무선기반 가스용품 실증前에 실증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스안전공사, 관련전문가 등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하는 등 안전관리 확보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연성 가스 대신 물성이 안정적인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 - 실증과정을 단계화하여 1단계로 실내(구축된 성능평가 장비 인프라)에서 안전성이 검증(법정검사 수준)되면, 2단계로 현장에서 실증을 추진(불활성 가스를 사용 안전성 확보) <p>◦ 가스 제어·차단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실증사업자 (민간기업 9개 포함 11개 실증사업자) 책임보험 가입</p>
---------------	-------------------------------------------------------------------------------------------------------------------------------------------------------------------------------------------------------------------------------------------------------------------------------------------------------------------------------------------------------------------------------------------------------

<매뉴판식 규제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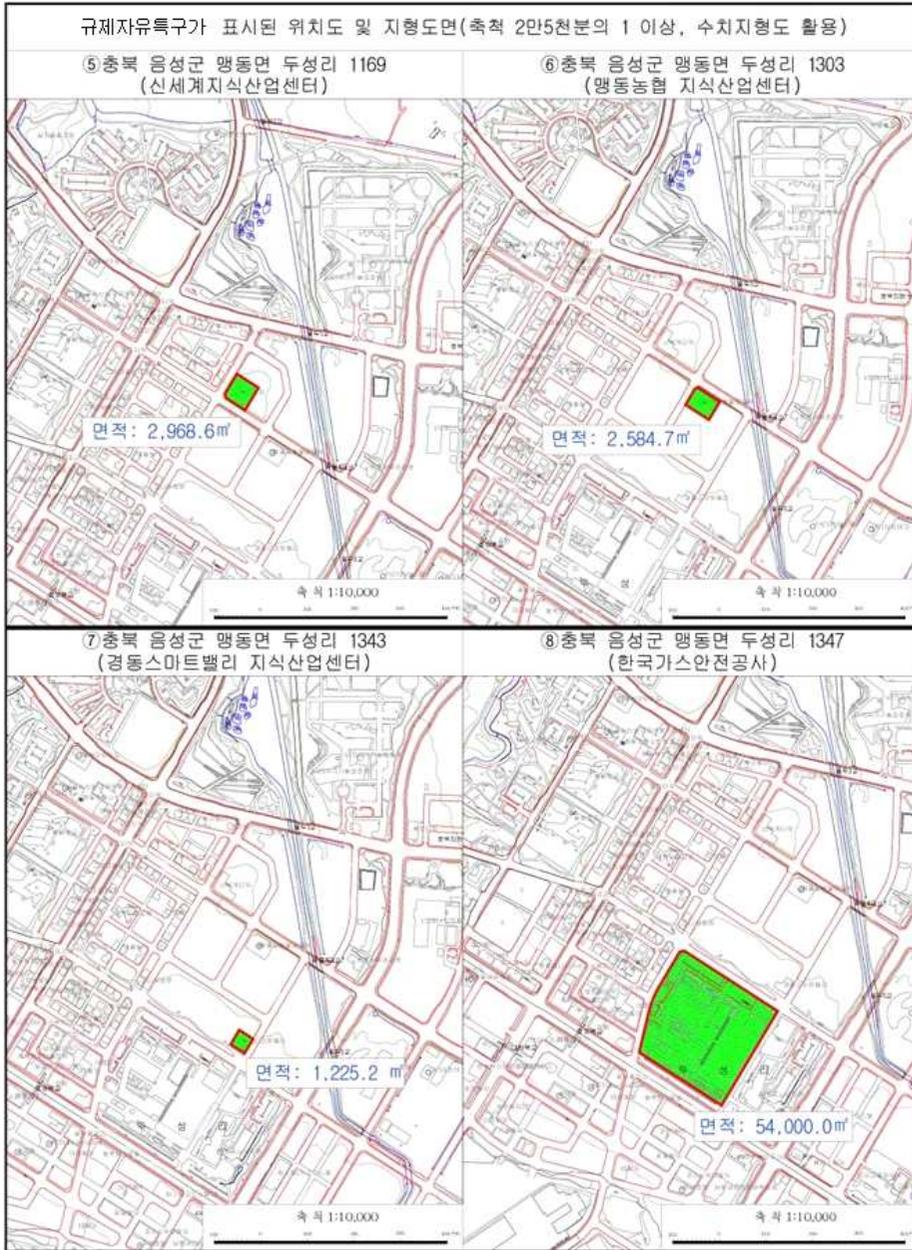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p>① 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5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및 실증 후 신속한 특허등록 및 사업화를 위해 특허 출원시 우선심사 특례 허용(특허법 제61조) <p>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11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특구사업자에 대해서는 특구내 IoT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대하여 비식별화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제한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을 적용 제외하는 특례허용 <p>→ (부대조건) 특구사업자가 가스관리 종사자나 가스 사용자 등으로 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앱이나 웹으로 가스제어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내에 설치된 가스 제어 장치 등의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할 것 <p>※ 관련사업자 : 한국정보공학(주), ㈜씨알아이지, 케이에스이씨(주), (주)부품디비, (주)엑사, (주)퀵템센싱, 인투카오스(주)</p> <p>③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11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사업의 겸업)에 따라 과기부장관의 승인(단, 매출액 300억원 이하는 제외)을 받아야 하나, 승인 면제 요청 <p>→ (부대조건) 특구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특구법 제119조에 따라 과기부장관의 승인 없이 통신기기제조업 영위 허용</p> <p>※ 관련사업자 : (주)유피오, 인투카오스(주), (주)퀵템센싱, (주)스마트센싱, (주)엑사(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님)</p>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충청북도 경제기업과에 비치



전라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충청북도 경제기업과(Tel : 043-220-3214, www.chung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전라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거리
1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286-4번지 외 193필지 및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256-1번지 외 1,570필지	2,729,000m ² / 9.5km
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370번지 외 775필지	5.3km
3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방마리 107-2번지 외 251필지	7.4km
4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806-4번지 외 7필지	0.6km
5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입암리 435-17번지 외 62필지	2.8km
6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연산동 380-3번지 외 1,048필지,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산 43-8번지의외 13필지	8.7km
7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024-1번지의외 200필지(목포시 용당동 자전거 전용도로)	3.3km
합 계		2,729,000m ² / 37.6km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 목적 : e모빌리티 규제개선을 통한 신시장 창출,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
- 지정 기간 : 2019.8.9. ~ 2023.8.8.(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용
1	초소형 전기차 주행실증	○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2	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실증	○ 물품적재장치 설치한 전기이륜차 주행
3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실증	○ 최소 적재정량(200→100kg이상) 및 승차정원 변경(1→2인) 실증 ○ 1회 충전 연속운전 시험기준 완화(3시간 25km → 2시간 이상, 17km이상) 실증
4	전기자전거 주행실증	○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350w 제한 완화 실증
5	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실증 *Personal Mobility	○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 PM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실증 ○ 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캠시스	박영태	인천시 연수구 벤처로 100번길 26
2	(주)세미시스코	이순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94
3	마스타자동차관리(주)	장기봉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31길
4	(주)케이에스티플레이스	김형일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5	(주)시엔케이	이용우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837
6	(주)그린모빌리티	오승호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DGIST
7	(주)비엠모터스	김진익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4길
8	(주)한중모터스	강영권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220
9	(주)대풍EV자동차	백옥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199
10	(주)성지기업	이명숙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42-22
11	(주)에이치비	김민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18
12	(주)에스티	정창훈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199-4
13	(주)코리아이브이	조승래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34
14	(주)리콘하이테크	이효근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5	(주)모토벨로	이종호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756
16	케이제이(K.J)모터스	김종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6가길
17	(주)에코아이	양해룡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
18	(주)유테크	최효성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19	(주)유신픽스	백승윤	대구시 남구 성당로60길 10
20	(주)미니모터스	정창현	경기 파주시 탄현면 축현산단로 88-12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 기간
1	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	2019.8.9. ~ 2021.8.8.
2	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 실증	2019.8.9. ~ 2021.8.8.
3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2019.8.9. ~ 2021.8.8.
4	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2019.8.9. ~ 2021.8.8.
5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주행 실증	2019.8.9. ~ 2021.8.8.

-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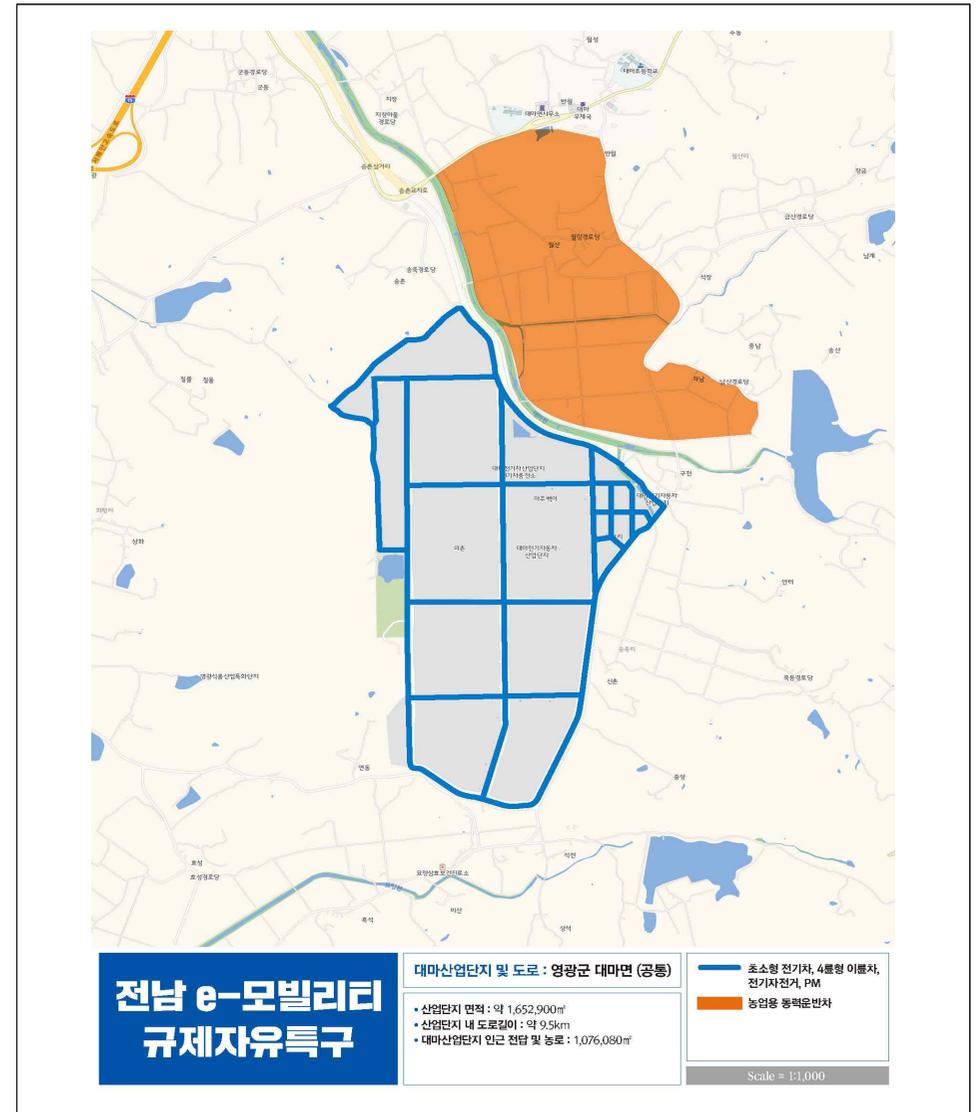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초소형전기차 주행 실증	①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 (부대조건) 일반도로 중 진입금지 구역(압해대교, 제한속도 70km/h) 우선 실증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은 자동차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라 재검토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 90km/h, 초소형자동차 최고속도 80km/h
2	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 실증	①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실증특례 허용 → (부대조건) 물품적재함 설치는 아래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 숙련자를 대상으로 사전 주행 안전교육 실시 후 실증하고, 지자체가 요청한 2인 탑승은 전복 사고감소 등 실증 통계를 보고 추후 허용여부 검토 <안전장치> • 이륜자동차용 ABS(Anti-lock Brake System) • 이륜자동차용 TCS(Traction Control System) • 이륜자동차용 ESD(Electronic Steering Damper) • 이륜자동차용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3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① 최소 적재정량 제한 완화(200→100Kg이상), 승차정원 변경(1→2인) 실증특례 허용 ② 1회 충전 연속운전 제한 완화 (3시간, 25km→2시간 이상, 17km 이상) 실증특례 허용 → (부대조건) 부품 국산화 비율 60% 이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검증 선행, 농로·농지 운행 제한 안전대책 마련 <안전대책> • 차량에 GPS, 응급상황 알림센서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비상시 경찰서·소방서와 연계하여 응급출동 등 조치가 가능토록 통합관제센터(인력 상주) 운영 • 통합관제센터는 차량 전원을 통제(주행가능 농로·농지 범위를 벗어난 경우 1분간 경고음, 이후 계속 운행시 차량 전원차단 등)

4	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p>①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로 주행 특례허용 → (부대조건) 「자전거법」에 규정(속도, 무게 등)한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스로틀방식에 한해 허용</p> <p>②전기자전거 모터정격출력 제한(350w이하) 완화 특례허용 → (부대조건)사용자의 속도 제한장치 해제 가능여부 검증*한 경우에 한해 모터출력 590w미만 허용 *시속 25km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사용자가 제거·변경 등 임의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p>
5	개인용 이동수단 (PM) 주행 실증 * Personal Mobility	<p>①PM의 자전거전용도로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 (부대조건)최소한의 도로주행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PM(제동·구동·조향 장치를 장착한 전동킥보드 등)에 한해 실증 허용하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p> <p><안전한 주행환경>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도 설치,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보완, 자전거전용도로 진출입로에 주행실증 안내, 인명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보도주행 및 2인 이상 탑승행위차단, 불법 주·정차 방지 대책 마련</p> <p>②PM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실증특례 허용</p> <p>③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특례허용 → (부대 조건)자전거전용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할 PM에 한해 면허 면제하고, 만13세 미만 어린이는 PM운행 금지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론+주행)을 실시하고, 1) 16세 이상 → 2) 13~15세로 단계별 실증대상을 확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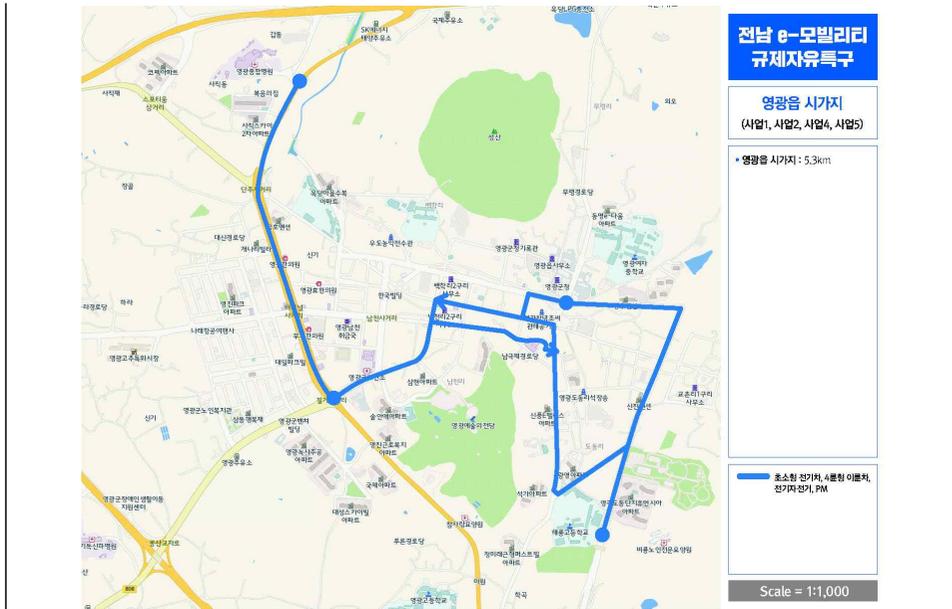
* 초소형전기차 60v이상 고전원전기장치의 탈부착 허용 실증특례의 경우 '규제없음'이므로 '신속확인'으로 변경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 및 전라남도 목포시·영광군·신안군에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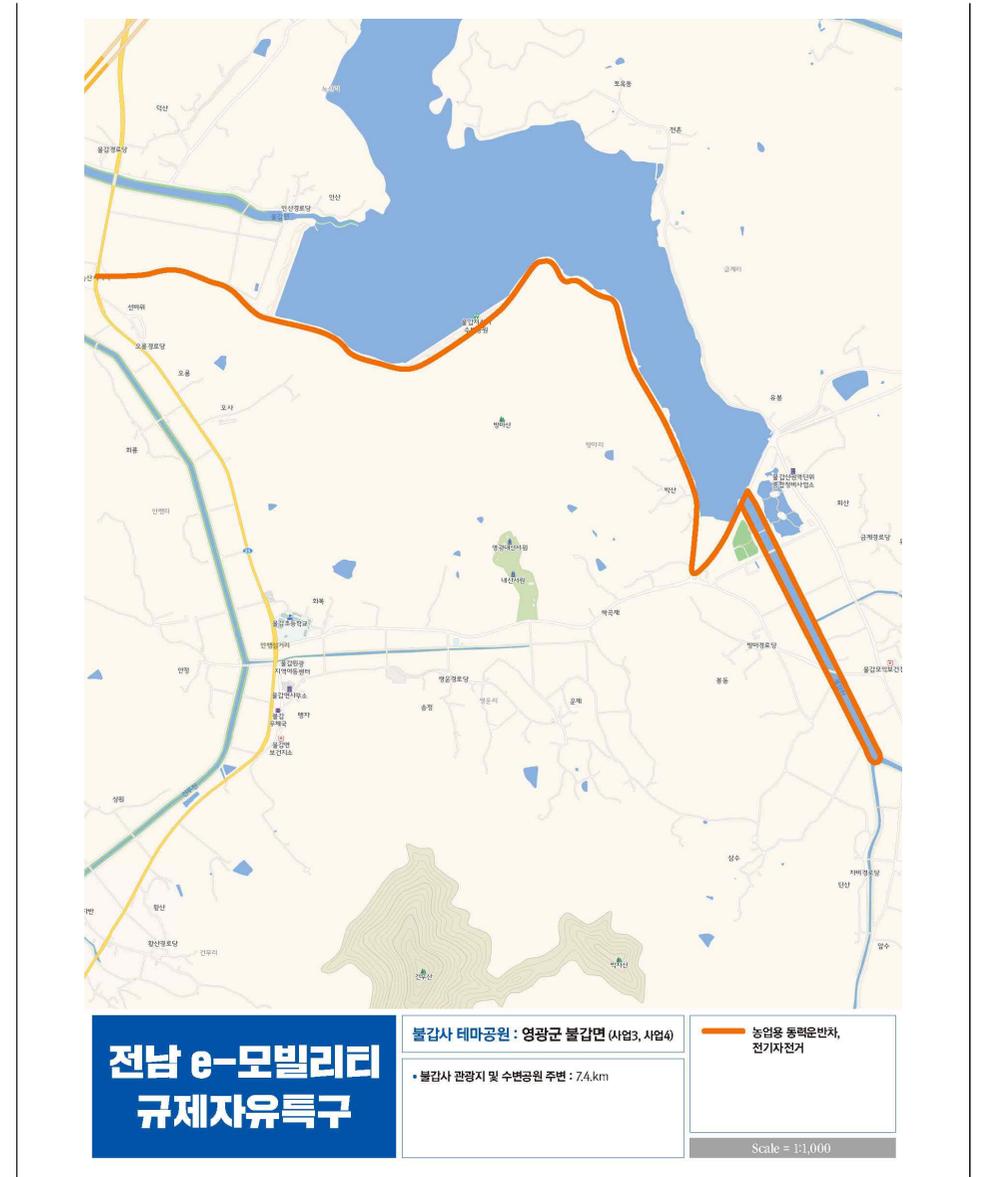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일원 : 2,729,000㎡ / 9.5km>



<영광읍 시가지 : 5.3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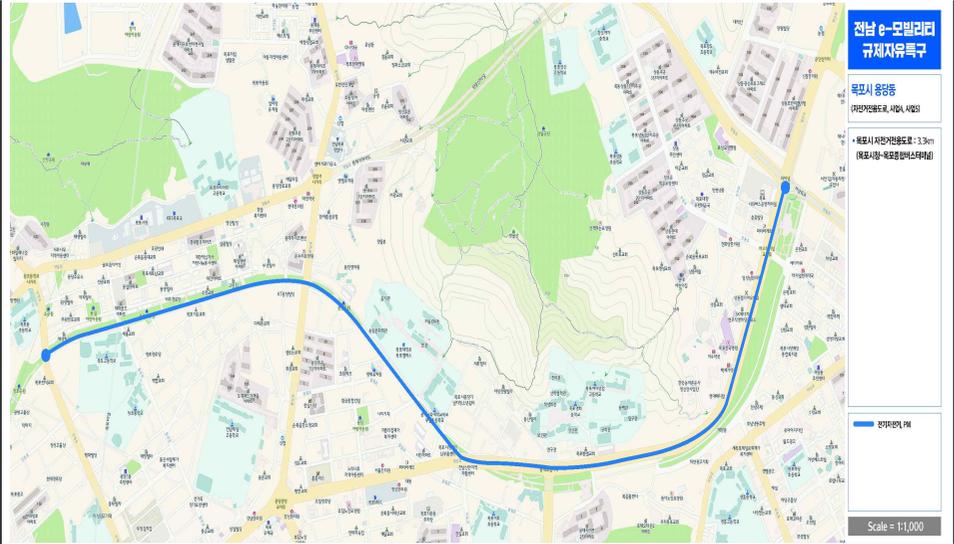


<백수읍(0.6km), 법성면(2.2km) 자전거 전용도로 일원 : 2.8km>



<불갑사 관광지 및 수변공원 일원 : 7.4km>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목포시 자전거 전용도로 일원 : 3.3km



목포시(6.8km) 신안군(1.9km) 자동차 전용도로 및 압해대교 일원 : 8.7km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Tel : 061-286-3960, www.jeon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 ²)
1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86, 85, 84, 82-3, 82-4, 82-1, 81-2, 81-5, 81-1, 73-2, 74, 75, 73-4, 502, 383-1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600, 599, 598-4, 598-8, 598-2, 598-3, 598-5, 616, 615, 622, 623, 624, 625, 621-3, 621-2, 620-4, 618-3, 617-2, 617-1, 5-1, 903, 621-1	27,768.6
2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235, 234, 231, 230-1, 232, 211, 211-1, 211-2, 211-3, 301-2, 301-1, 353-1, 210-1, 355-1, 354, 209-1, 209, 208-3, 210, 211-4, 208-5, 208-4, 212-2, 212-1, 212-3, 212, 228-1, 228, 207-3, 213, 214, 136, 135, 141-6, 139, 137, 141-3, 138, 226-4, 226-3, 226-2, 215, 227, 229, 230, 1140-6, 108-1, 107-1, 205-2, 216, 301-3, 75-4, 75-1, 369, 370, 373, 371-1, 196-2, 371-2, 196, 197, 196-1, 198, 199, 200, 201, 1143-1, 174-1, 175, 175-3, 175-2, 173, 172, 171, 170, 169, 175-1, 176, 174, 177-2, 177-1, 178, 179, 167, 168, 1142-5, 1142-1, 1142-6, 147-1, 166, 165, 181, 180, 180-1, 182-2, 182-1, 183, 183-1, 184, 184-1, 164, 184-3, 162, 147-2, 147-3, 163, 153, 152, 151, 149, 161, 157, 155, 154, 113, 116, 118, 119, 120, 115, 112, 111, 110, 114, 109, 107-2, 107-3, 107-1, 1142-9, 1142-8, 1142-7, 108, 294-1, 293, 294-3, 295-1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298-4, 300-1, 301-4, 301-2, 301-3, 305, 302-4, 302-2, 303-2, 303-4, 302-1, 302-3, 303-3, 304-2, 373-9, 304-3, 306, 308-1, 307-1, 250-1, 249, 251-1, 251-2, 262, 261, 260, 258, 252, 256-3, 253-1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162, 161-1, 148-1, 370-1, 36, 147, 39, 146, 145, 144, 143, 142, 40-1, 43, 44, 138, 136, 135, 137, 134-1, 133-2, 139, 371-3, 134-3, 134-2, 132-1, 92-1, 31-1, 133-1	340,495.87
3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1653,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699,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206, 208-2, 208-4, 208-3, 186-1, 184-1, 183, 187, 186-2, 188-1, 188-2, 188-3, 201, 202-2, 202-1, 204-6, 204-1, 205-1, 205-2, 204-2, 204-8, 204-3, 204-5, 205-3, 208-4, 205-4, 204-9, 117-1, 117-2, 117-3, 202-1, 203-1, 203-3, 203-2, 372-3, 200-1, 200-2, 199-1, 198-1, 189-2, 189-1, 190, 196-3, 196-1, 199-2, 198-2, 197-1, 192, 191, 179, 177, 174-1, 178, 193-1, 193, 194-1, 194-3, 194-2, 173, 173-3, 170, 172, 173-1, 373-10, 171, 168, 169, 167, 372-4, 195-1, 195-2, 197-2, 195-3, 117-4, 217-5, 118-2, 118-3, 119-3, 119-2, 119-1, 120-1, 120-2, 151-3, 151-2, 151-1, 152-1, 153-1, 156-1, 382, 153-2, 156, 157, 158, 385, 166, 159, 155, 154, 163, 160, 160-2, 165, 164, 381, 160-1, 160-4, 160-3, 161-2, 150-1, 150-5, 149-1, 150-2, 150-4, 150-3, 149-3, 149-2, 148-3, 373-5, 148-2, 133-3, 133-4, 132-2, 92-2, 91-2, 133-5, 126-2, 126-1, 125, 124, 123-1, 123-2, 131, 122-2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640, 631, 641, 630, 627, 322-1, 산61, 산62, 314, 642, 643, 644, 645, 646, 647-1	188,429.75
합 계		556,694.22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 목적 :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정 기간 : 2019.8.9. ~ 2023.8.8.(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용
1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진단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 등급분류 기준 마련 ○ 사용 후 배터리 팩/모듈 성능·안전성 시험평가 등
2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제조 배터리 內 셀 단위 잔존 파워를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 재사용(재제조) 기준 마련 ○ 산업용·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특성화 ESS개발 ○ 재사용 ESS 에너지 효율등급 등 인증
3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분리해체 및 화재, 폭발방지를 위한 방전 전(前)처리 ○ 소재추출가공 및 고순도화(습식공정) ○ 재사용 불가 배터리 매각 대상 및 기준 마련

4. 규제자유특구에 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경북테크노파크	이재훈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2	(주)성호기업	손성익	경북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1길 74-51
3	(주)피플웍스	허준수, 민경백	경북 구미시 1공단로 228(공단동)
4	에스아이셀	김창인	인천시 남구 염전로 330. 6층 609호 (주안동, 주안제이타워)
5	(주)에코프로GEM	김수연, 진기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단남로 75번길 15
6	GS건설(주)	임병용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타워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 기간
1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2019.8.9. ~ 2021.8.8.
2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2019.8.9. ~ 2021.8.8.
3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2019.8.9. ~ 2021.8.8.

-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p>①특구사업자도 전기차 배터리 분리 가능하도록 허용 → (부대조건)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등 배터리 분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분리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 <배터리 탈거 시 준수사항> - 반납된 배터리 탈거 시 환경부 표준메뉴얼 준수</p> <p>②반납된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등급(재사용, 재활용)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 허용 → 반납된 배터리의 등급분류 및 성능평가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재사용·재활용 단계진입이 가능하기에 실증특례를 허용</p>
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p>①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 재사용(재제조)은 경제성이 높으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재사용 기준 및 절차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관련 시장 진입이 곤란하기에 실증을 통한 기준 마련 필요 <배터리 재사용 시 준수사항> - (화재 예방) 모듈 충·방전 시험 시에는 전지 이상에 의한 화재발생을 막기 위해 자동차단기능을 적용할 것 - (폭발위험 대비) ESS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과열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시스템을 갖출 것</p> <p>②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 추가 → 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어 상품출시 곤란, 재제조 품질인증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포함 허용</p>
3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p>①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매각 대상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 매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 및 그에 대한 기준이 선결되어야 가능하기에 실증특례를 허용 <배터리 재활용 시 준수사항> - (화재 및 폭발위험) 배터리 방전 시 1차 전기방전, 2차 염수 방전을 통해 잔존 전류를 완전히 제거할 것 - (휘발성 유기물질 대기오염) 휘발성 유기물질 포집과 분진의 집진을 위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 - (폐수처리) 습식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종말처리장 등을 통해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p>

* ①전기차 배터리 반납 대행권한 부여 실증특례, ②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실증특례의 경우 '규제없음'이므로 '신속확인'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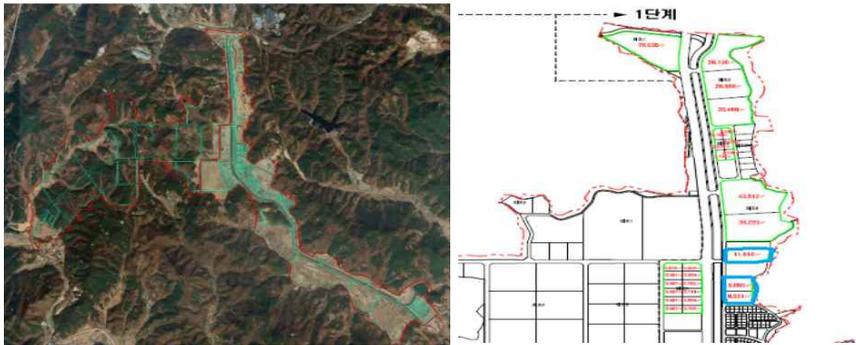
<메뉴판식 규제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공동 (3개 세부사업)	시·도지사가 반납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특구사업자에게 매각 시 지역특구법 제49조에 따라 실증기간 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규제특례를 허용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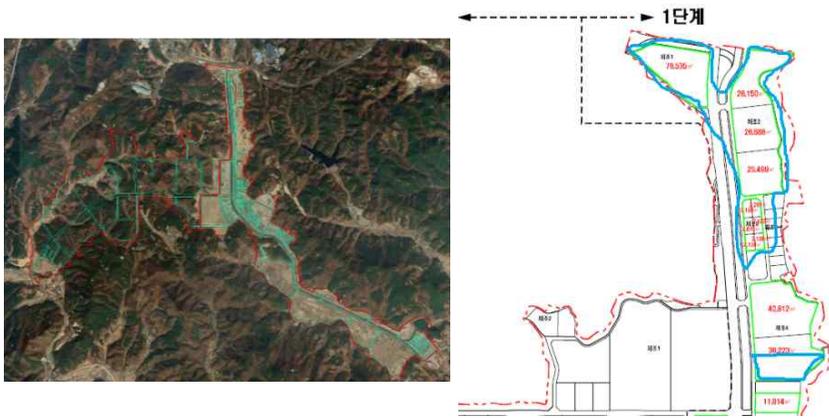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과에 비치

1)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사업 : (재)경북테크노파크, (주)성호기업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및 지적도(파란색 표기)>

2)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 : 피플웍스, 에스아이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및 지적도(파란색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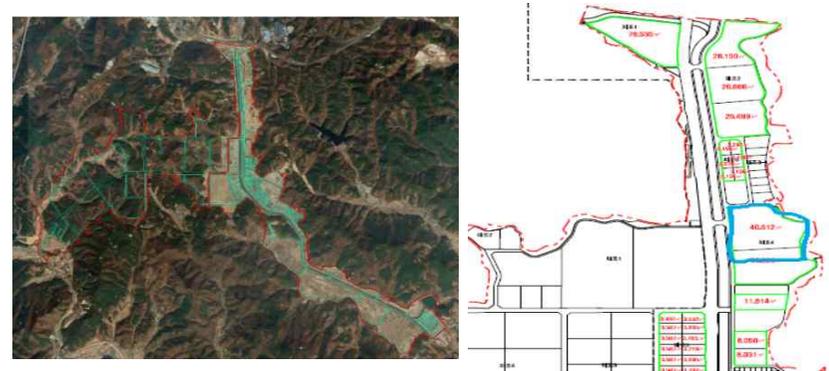
3)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사업 : 에코프로GEM, GS건설(주)

▶ (에코프로GEM) 경북 포항시 영일만 산업단지 (1단지 4블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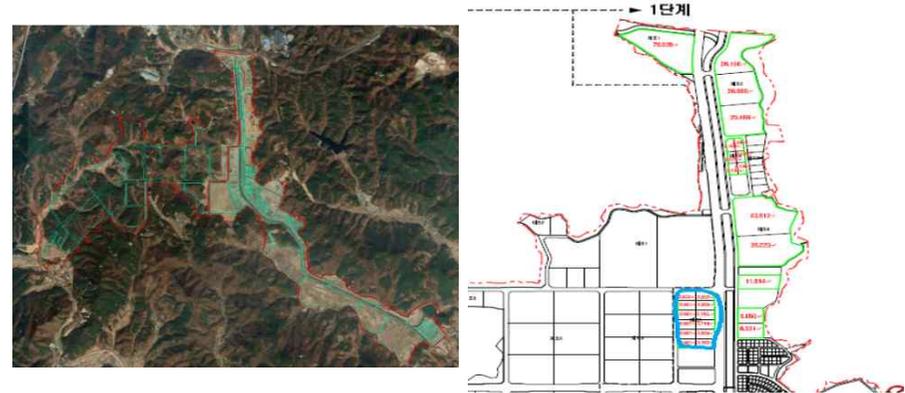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위성사진 및 특구지역 (파란색 표시 부분)>

▶ (GS건설)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및 지적도(파란색 표기)>



<GS건설 2차확대 예정구역>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과(Tel : 054-880-2476, 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